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립

1997년 5월 28일 의료개혁위원회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립』에 관한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1. 현황 및 문제점

분쟁해결 소요기간의 장기화 및 소요비용의 급증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연간 약 6,700건으로 추정), 사고일로부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음.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 1심 판결에는 평균 933일, 2심판결에는 평균 464일이 소요됨.
- 따라서 분쟁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적 비용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현재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됨.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부재

-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환자들이 취해야 할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변호사 선임
 - 경찰·검찰 등에 형사고발
 - 의사협회 공제회의 중재 요청
 - 당사자간 합의
 - 의료사고 가족협의회·연합회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도움 요청
 - 지인(知人), 제삼자 등을 동원하여 의료인·병원 압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은 물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안정적 진료환경의 미흡

- 의료인·병원의 입장에서 보상액이 과중하여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원의 경우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있음.
- 보상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 의사협회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공제회의 보상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의료사고에 대비한 민간의 보험상품도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과오여부 판단의 어려움

-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과오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 의사의 과오 판단은 제3의 중립적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조계에서 판단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임.
- 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인정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과오여부 판단의 난점으로 배상액의 결정도 판사에 따라 편차가 심한 실정임.
- 검찰 등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과오 여부 판단을 위한 증거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 의료사고의 실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주체가 없으며, 정부나 의료인단체도 의료사고 백서 발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합의 미흡

- 의료분쟁조정법안이 1988년이래 9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음.
 - 법조계 등에서는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사전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반의사불벌제도는 여러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조정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의사 측에서는 공제제도의 비용을 의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조정전치주의를 통하여 의료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공익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책건의

분쟁처리과정의 정형화

- 소송전 조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함(조정전치주의).
- 조정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조정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처리를 기할 수 있으며, 재판청구권 제약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와 같이 『조정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공익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함.
- 조정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의사와 법조인 또는 소비자대표 등의 공익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사관을 둠.

의사배상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의무화

- 의료분쟁 관련 보험/공제제도를 확충하고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유한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과 무한책임인 종합보험/공제의

.....

주요 정책토론 : 효과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정립

의료행위는
공익성과
선의성을 가진
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사고
평가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며, 운영주체는 의료인단체 및 일반 보험
회사 등으로 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의 제한 검토

- 의료행위는 공익성 및 선의성을 가진 행위이며, 현행 『의료법』은 응급진료 이외에도 진료거부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요양취급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으며 평등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중대과실을 제외한 의료과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의료사고 평가정보관리 기능 강화

- 의료사고 관련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인의 분쟁기록, 의료과오기록, 분쟁조정기록 등의 정보를 보전·관리하는 한편, 법원이 의료관련 사건을 조정기구에 통보하도록 함.